

의안
번호

1232

제15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복지위원회(2026.3.9.)

창원시 뷰티제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의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창원시 뷰티제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6.3.9.

산업경제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 2. 26. 김상현 의원 등 15명

나. 회 부 일 자: 2026. 2. 2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15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복지위원회(2026.3.9.) 상정, 질의·답변, 토론, 의결

2. 제안이유(제안설명자: 김상현 의원)

창원시 뷰티제조산업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산업기반 구축, 기업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산업 구조 다변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에 따른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뷰티제조산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라.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제9조)
- 마.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 바.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화장품법」 제2조
「지방자치법」 제13조
- 나. 관계법령 저촉 여부: 해당 없음
-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출
- 라. 입법예고(2026. 2. 26. ~ 3. 3.): 의견 없음

5. 전문위원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서효인)

가. 제정 주요내용

- (안 제1조) 창원시 제조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 구조의 다변화'를 목적으로 명시함.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뷰티제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뷰티제조산업의 기반 조성 and 산업 구조의 다변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안 제2조) “뷰티제조산업”에 대한 정의를 각 호로 규정함.

안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뷰티제조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화장품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의2¹⁾까지에 따른 화장품의 연구개발·제조 및 품질 향상과 관련된 산업 2. 인간의 외적 아름다움 증진과 관련한 서비스, 미용기기 등의 제품 기획·제조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산업 3. 그 밖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뷰티제조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	---

○ (안 제3조) 시장의 책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선언적 의미와 함께
예산 확보의 근거를 마련함.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뷰티제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

○ (안 제4조) 뷰티제조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명시함.

안 제4조 (뷰티제조산업 지원사업)	시장은 뷰티제조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업·경영 지원 및 기술개발·연구의 촉진 2. 우수 브랜드 육성, 국내외 판로 개척 및 인증 획득 지원 3. 집적단지 및 체험공간 조성 등 기반시설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 (안 제5조~제9조) 뷰티제조산업 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창원시 뷰티제조산업 자문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뷰티제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창원시 뷰티제조산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뷰티제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1) 「화장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가.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나.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다.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라. 모발의 색상 변화·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마.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 3의2. "맞춤형화장품"이란 다음 각 목의 화장품을 말한다.

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

나.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小分)한 화장품. 다만, 고형(固形) 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내용물을 단순 소분한 화장품은 제외한다.

안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의결되면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뷰티제조산업 육성 및 지원 총괄 업무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뷰티제조산업 관련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뷰티제조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안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안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뷰티제조산업 육성 및 지원 관련 총괄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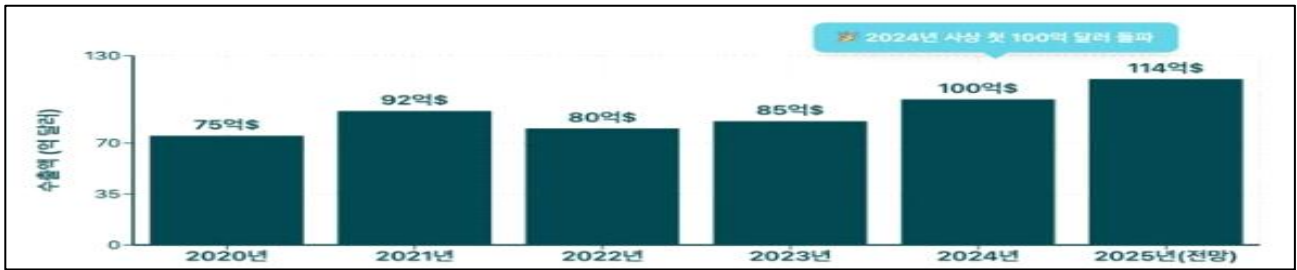
○ (안 제10조) 뷰티제조산업 지원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10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

○ (안 제11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조례안 참고)

나. 검토 의견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해외로 수출된 국내 화장품 수출액이 100억 달러(한화 약15조 원)을 기록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국내 화장품 수출액)

- 본 조례안은 제조업 기반이 탄탄하나 기계, 방산 등 분야 비중이 커 경기 변동에 민감한 창원시의 단일 산업 구조를 탈피하고, 글로벌 뷰티시장의 수출 성장 흐름에 발맞춰, 창원시의 우수한 제조 역량을 신산업과 결합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됨.
- 안 제2조제2호에서 뷰티제조산업의 정의에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음. 조례의 제명과 목적이 ‘뷰티제조산업’의 육성임을 감안할 때, 제조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미용 서비스업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또한 집행기관 검토의견도 서비스 분야 육성에 관해서는 본 조례에 명시하는 것보다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서 “뷰티제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음.

반면, 안 제4조 뷰티제조산업 지원사업은 중장기적 예산 확보와 지원 정책의 연속성이 담보되어야 함. 특히, 제3호 집적단지 및 체험 공간 조성 등 기반시설 지원은 막대한 예산(부지 매입, 건축비 등)과 장기간의 행정 절차가 소요되는 사업임.

따라서 시책 수립·시행에 대한 사항이 선언적 규정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의 단발성 예산 지원과 자의적인 사업 추진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뷰티제조산업 육성을 위해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내용(수립주기, 목표, 추진방향, 재원조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의무화하는 규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 안 제6조는 창원시 뷰티제조산업 자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해산하는 비상설 위원회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뷰티제조산업은 초기 육성 단계로, 산업 기반 조성 및 일관된 정책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지속적인 자문이 필수적임. 매번 위원을 위촉·해촉하는 방식은 행정력을 낭비하고 정책의 연속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위원회 구성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 안 제7조는 위원장의 직무에 대한 것임. 일반적으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에는 해당 내용이 없음.

안 제6조에서 위원회에 부위원장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역할 분담이 필요함.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안정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는 부위원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0조는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법인을 규정함에 있어 ‘비영리’로 한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함. 뷰티제조산업 육성 사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성과 수행능력을 갖춘 법인이라면 영리 여부와 관계없이 수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례 목적 달성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됨.

- 끝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과의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남성 중심의 중공업 위주인 창원시 산업 구조 하에서 뷰티제조산업 육성은 청년 및 여성 인력의 선호도가 높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 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인구 유출 방지, 미래 먹거리 창출 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시의적절하고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6. 질의·답변요지: 기재생략

7. 토론요지: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요지: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